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237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라 한다)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별표] “관리대상 물자·업체 및 기관”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추가
- 기타 오기 정정*, 문장 부호 보완(법령명에 홑낫표 추가) 및 조문체계 정정
- * 제2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조 제2호 정정 등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행정데이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데이터팀
- 전자우편 : tjsw04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데이터팀(전화 : 02-2110-1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